

[승강기 유지 보수 점검 계약서]

용현유원아파트 승강기 유지점검관리에 관하여 용현유원아파트 위탁관리회사(주)쌍용개발 (이하 “갑”이라 함) 과 신성엘리베이터(주) (이하 “을”이라 함)는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 내역 및 계약금액) 계약 승강기 내역과 목적물은 아래와 같다

1. 현장명 (건물명): 용현동 유원 아파트
2. 소재지: 인천 미추홀구 낙성중로 102
3. 계약목적물 및 월 유지관리 점검료

구분	기종	용량 및 용도(규격)	댓 수	단 가	금액
	삼일 ELTEC	승객용	29	49,000	1,421,000
	소 계				1,421,000
	부가세(10%)				142,100
	합 계				1,563,100

4. 계약 기간 : 2019 년 10 월 01 일 ~ 2020 년 09 월 30 일 (12개월)

제2조(점검방법 및 고장처리)

1. “을”은 매월1회 이상 별첨한 점검 보수 시방서에 따라 자체점검과 주유 조정 청소를 실시하고 전자점검일지를 작성하여 “갑”에게 제공한다.
2. 전항의 점검은 “을”의 취업시간 내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갑”의 요청에 의하여 “을”의 취업시간 외에 점검보수를 실시할 경우 “갑”과 “을”은 상호 협의하여 사전 통보를 원칙으로 한다.
3. 불시에 고장이 발생한 경우에는 “갑”의 직접통보에 의하여 전항의 구매없이 “을”은 신속하게(약 30분내 도착) 기술자를 파견하여 적절한 조치 및 점검 보수한다
4. “을”은 고객의 안전과 긴급 사항을 위하여 24시간 유.무선 통화 할수 있어야한다.

제3조(법정검사)

1.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에 의하여 국가기관에서 시행하는 법정검사 (정기검사, 수시검사, 정밀안전검사)는 관리주체인 “갑”이 신청하여 수검하며 본 계약에는 검사수수료 및 신설되는 법규 제반사항은 포함하지 않는다.
2. 법정검사와 관련 “을”은 정기검사준비 및 자체점검자를 파견하여 수검에 협조토록 한다

제4조(안전책임 및 보험가입)

1. 승강기 운행과 관련한 안전사고시 점검보수의 잘못은 “을”에게 책임을 귀속시킨다
다만, 건축시설물 부설과 고의적, 제5조 단서 사항은 “갑”이 책임진다.

- 2.“을”은 승강기시설 안전관리법 제11조 3항에 의거 영업배상보험 (생산물 배상책임보험) 가입되어 있어야 하고 “갑”이 요청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면책 사항)

점검보수 및 책임의 한계는 2차측인 (MAIN CONTROL) 전원 인입 단자반 이후로 하며 다음 각 항의 경우로 인하여 발생한 고장 및 사고 또는 “갑”의 직접 및 간접 손해에 대하여 “을”은 면책된다.

1. 천재지변, 화재, 시설물 하자 등 불가항력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 2.“갑”이“을”과 협의 없이 임의로 전기회로의 변경, 부품의 제거, 이설교체 등의 원인으로 발생한 사고
- 3.“을”이 승강기 이용시 주의사항을 사전 고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갑”의 관리 또는 사용상의 부주의나 의무 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
- 4.“갑”이 지불할 점검보수 요금이 2개월분 이상 체납된 후 발생한 사고
- 5.“을”이 계약승강기를 점검한 후 안전운행을 위하여 수리보수 또는 노후부품의 교체를 “갑”에게 요구하였으나 “갑”이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

제7조(대금청구 및 부품교체비)

- 1.본 계약의 보수료 지급은 매월 “을”의 청구에 의해 매월“갑”의 결재일에 지급한다.
- 2.승강기 일상점검 및 정기점검시 발생한 부품 교체는“갑”에게 견적서 또는 내역서를 제출하고 긴급으로 인한 사항은 선 조치 후 승인서나 청구서를 제출 한다.
- 3.정기점검과 무관한 부품교체 또는 공사 범위일 경우“을”은 인건비를 청구한다.

제8조(보수 유.무상 범위)

- 1.무상범위: 휴즈, 신호용 램프, 마이크로 및 리미트 스위치, 각부 조작키, 볼트, 너트, 모터벨트, 레일오일, 작업등, 등 기타 소액은 무상 공급하나 고의적 파손 또는 일시 일괄적 대량 교체는 제외한다.
- 2.유상범위: 메인 쉬브, 와이어로프, 베어링, 라이닝, 모타수리 및 제어반 내, 외부의 부품 기판교체.도아록, 비상장치등 유상처리하며 무상부품의 일괄전량 교체는 유상처리 한다.
- 3.위 사항 외 모든 부품 교체는 “갑”“을”상호 협의하여 유. 무상 처리 한다.

제9조(시정조치 및 계약해지)

“갑”과 “을”은 아래의 사항이 지켜지지 않을시 시정조치 및 계약을 해지 할수 있다.

- 1.“을”이 정당한 사유 없이 만 2개월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지 않을시
- 2.“갑”이 고장처리를 요청하였으나 출동시간이 30분이상 지연되는 횟수가 10회 이상일때
- 3.“을”이 청구한 점검관리비 및 부품교체비를 “갑”이 부당하게 2개월 이상 체납하여 관리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또한 안전사고 우려로 노후부품 교체나 시설물 이전을 “을”이 “갑”에게 요구하였으나 응하지 않을시 사전 통보 후 해약 할 수 있다
- 4.위 1항, 2항 외 “갑”이나 “을”이 상호간 협의 없이 일방적 해약과 이종계약은 잔여기간 유지관리비 총액의 30%를 위약금으로 지급해야 된다.

제10조(협의사항)

기타 본 계약서에 기재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관례를 준수하고 “갑”과 “을” 상호 신의로 합의하여 해결한다

상기와 같이 계약하며, 본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하였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쌍방이 날인하여 각 한통씩 보관한다.

계약서 작성일: 2019년 09월 03일

“갑”

위탁관리회사 (주) 쌍 용 개 발
대 리 인 용현유원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최 현 재 (인)
주 소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낙섬중로 102

“을”

상 호 : 신 성 엘 리 베 이 터 (주)
대 표 자 : 윤 순 권 (인)
주 소 : 인천광역시 부평구 원길로 14번길 33 형우빌딩1차 3층
사업자 등록번호 : 122 - 81 - 59644
업 태 : 건설, 서비스
종 목 : 엘리베이터 설치 및 유지보수
전 화 : (032) 522-0178~9
팩 스 : (032) 522-0201